

농림축산식품부 시 정 요 구

제 목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원주시, 삼척시, 횡성군, 영월군, 평창군, 정선군, 화천군, 양구군,
인제군, 양양군

내 용

강원도에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농림사업시행지침」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급대상농지, 지급대상자, 신청자격, 지급요건 등을 확인하고 관련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최종 직불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」 제4장,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면적의 합이 농림축산식품부령[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2조의5(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을 위한 최소 토지면적)영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농지와 초지로 구분하여 각각 1천제곱미터를 말한다]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농업인 등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.

따라서 신청자인 농업인이 각 직불제 신청 당시에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으나, 이후 직불제 등록(신청)농지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단계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의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, 농지 이용여부 등이 충족되지 못하여 실제 재배

농지면적의 합이 1,000㎡ 미만으로 현장점검 결과가 전산시스템으로 자치단체에 전송되었으며, 그 결과를 자치단체에서는 지급요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그런데도 원주시, 횡성군, 평창군 등 10개 시·군에서는 전송된 점검결과에 따라 불이행 및 불일치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, 직불제 사업대상자 지급제외요건 중 농지면적(농지 및 초지로 이용)의 합이 1,000㎡ 미만인 대상자에게 2014~2015년까지 총 90호 농가, 1,923,430원을 [표]와 같이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.

[표]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부당 지급 현황(1,000㎡미만)

시군명	직불금 지급내역(㎡, 원)			직불금 회수 대상내역(㎡, 원)	
	수령자	지급면적	지급금액	회수대상 면적	회수금액
합계	90	51,065	1,923,430	51,065	1,923,430
원주시	3	2,010	71,610	2,010	71,610
삼척시	1	430	17,200	430	17,200
횡성군	4	3,209	91,660	3,209	91,660
영월군	3	1,660	64,350	1,660	64,350
평창군	32	18,823	711,730	18,823	711,730
정선군	6	4,387	152,760	4,387	152,760
화천군	22	8,552	321,160	8,552	321,160
양구군	6	3,403	149,320	3,403	149,320
인제군	12	7,606	304,240	7,606	304,240
양양군	1	985	39,400	985	39,400

조치할 사항 원주시장, 삼척시장, 횡성군수, 영월군수, 평창군수, 정선군수, 화천군수, 양구군수, 인제군수, 양양군수는

조건불리지역 토지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아닌 농업인에게 지급된 조건불리지역직불금 1,923,430원을 회수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